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조영덕 의원)

의안 번호	20-151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: 2020. 10. .

발의자: 조영덕, 김기석, 김영미, 김진천,  
이민석, 최은하, 한일용

## 1. 개정이유

상위법인 「지방재정법」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의 기부채납 무상 사용기간 기산일에 관한 규정 내용이 상이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기부채납 무상사용 사용기간의 기산일 기준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 변경하고,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(안 제15조)

## 3. 관계법령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

## 4. 예산조치: 없음

## 5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0. 10. 16. ~ 10. 21.

나. 붙임: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무상사용기간)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를 따르되, 그 기산일은 사용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5조(무상사용기간)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,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.</u> (생략)</p>	<p><u>제15조(무상사용기간)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를 따르되, 그 기산일은 사용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.</u> (현행과 같음)</p>

## 【관 계 법 령】

###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21조(사용·수익허가기간) ①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, 그 기간은 20년(이하 이 조에서 "총 사용가능기간"이라 한다)을 넘을 수 없다. <개정 2014. 1. 7., 2015. 1. 20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·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 다만,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6. 8., 2014. 1. 7., 2015. 1. 20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·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. <개정 2010. 2. 4.>

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

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

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·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·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·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. <신설 2010. 2. 4.>

[전문개정 2008. 12. 26.]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**  
**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- 해당없음**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

**3. 미첨부 사유**

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 (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)에 대해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님

**4. 작성자**

작성자 이름	기획재정국 재무과 손경화
연 락 처	02-3153-8603